

<별지 제6호 서식>

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 등 위임장

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

본인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대하여 아래 기재된 사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. (단, 착오송금 반환금액의 수령에 관한 권리는 위임 불가)

○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채권

1. 대상채권의 금액 :	금	원정(₩)
2. 대상채권의 내용 :			
양도인이	년	월	일에 채무자의 (금융회사명)
금	원정(₩)	중에서 착오송금한 금
(₩)	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	계좌로 송금한 원정

○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, 취소 및 매입계약 해제에 관한 권한

- 채권 양수양도계약 체결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 및 반환지원에 필요한 추가 자료·비용 등의 제출·납부, 그리고 반환지원신청의 취소 및 매입계약 해제에 관한 일체의 권한

년 월 일

대 리 인

성 명 : (인 또는 서명)
 주민등록번호 :
 주 소 :
 휴대전화(이메일) :
 위임자와의 관계 :

위 임 자

성 명 또는 상 호 : (인감날인)
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:
 주 소 :
 휴대전화(이메일) :

- 주) 1. 위임자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위임자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 (단, 해외거주 및 군복무로 인하여 인감증명서 첨부이 불가능할 경우 해외거주자는 위임장에 해당 대사관의 공증이 있어야 하고, 군복무자는 복무확인서 및 부대장 확인 필요)
 2. 위임자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 3. 위임자가 위임의 해지 또는 대리인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<별지 제7호 서식>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 등 위임 해지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「예금자보호법 시행령」 제24조의7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제1항 제19호에 근거함